

<p>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 식 바랍니다.</p> <p>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 위원장 오운균 수고하셨습니다.</p>	<p>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전문위원 민귀식 전문위원입니 다. 충청북도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p>
--	---

〈참조〉

忠淸北道議會議員日費 및 旅費支給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安

檢 討 報 告

1. 提 案 者 : 金慶會議員外 8人

2. 提案日字 및 回附日字

가. 提案日字 : 1992年 3月 31日

나. 回附日字 : 1992年 4月 1日

3. 提案理由

國內旅費規定(大統領令 第13600號 '92. 2.29)이 改正됨에 따라 關聯 條例
를 整備하기 為함.

4. 主要骨子

從前에는 特地, 甲地 및 乙地의 3個 地域 區分에 따라 旅費를 差等支給하였
으나 앞으로는 旅費支給對象地域을 甲地 및 乙地 2個地域으로만 區分하고 宿
泊費, 現地交通費 等의 國內旅費 單價를 平均 10% 引上함.

5. 檢討意見

國內旅費 規程이 '92. 2. 29로 改正(大統領令 第 13600號)됨에 따라 그에 따른 關聯條例를 整備하기 為한 것으로, 地方議會議員이 會期中 地方議會의 會議(以下 “本會議”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본회의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依하여 公務로 旅行할때에 支給할 수 있는 旅費를現在 3個地域으로 區分 支給하던것을 2個地域으로 調整하여 支給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本 條例案은 妥當하다고 思料됨.

6. 添 附

- 가. 忠淸北道議會議員 日費 및 旅費 支給에 關한 條例중 改正 條例案
- 나. 國內旅費支給基準 新・舊條文 對照表
- 다. 地方自治法 第32條
- 라. 國內旅費規定(大統領令 第13600號)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7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속박비 (1야당)	식비 (1야당)	식탁료 (1야당)
외장· 부외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갑지 5,000 율지 4,000	17,000	11,000	800
외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갑지 5,000 율지 4,000	17,000	11,000	800

- 비고 : 1.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율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은 새마을호 특실로 하되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수로여행시 폐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여비 지급기준 신구조문 대조표

(단위 : 원)

구 分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차동차 운 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야당)	식탁료 (1야당)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외장· 부외장 의 훈	1등급 2 등 정 액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특지 4,500 갑지 4,500 율지 4,000	폐지 16,000 갑지 5,000 율지 4,000	특지 10,500 갑지 17,000 율지 15,000	폐지 800 갑지 11,000 율지 9,000

(비 고)

현 행	개 정
1. 특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과천시, 경주시, 제주시 갑지는 도청소재지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안산시, 구리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충주시, 이리시,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구미시, 로동시, 마산시, 울산시, 진주시, 서귀포시 율지는 기타지역	1. 폐지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
2. 차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 장관의 인·허가금을 기준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좌동과 같은
3.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 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행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 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은 새마을호 특실로 하되 당행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 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
	4. 수로 여행시 폐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